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05 발의연월일: 2024. 10. 25.

발 의 자:유용원・임이자・조 국

이달희 · 김형동 · 정성국

백종헌 · 김소희 · 신동욱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 군의관 제도는 3년 단기 의무복무 자원에 의존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유사시 군 의료체계 붕괴의 우려가 있음.

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 의료체계에 특화된 유능한 장기복무 의무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의료체 계를 개선하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제1조).
- 나.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(이하 "의무사관학교"라 함) 를 설치함(안 제2조).

- 다.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함(안 제3조).
- 라.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(안 제4조).
- 마.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 및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,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바.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고, 의학사 학위를 수여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3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유능한 군 의무장교의 양성을 통하여 정예화된 군 의료체계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치) 군(軍)의 의무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 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(이 하 "의무사관학교"라 한다)를 둔다.
- 제3조(수업연한) 의무사관학교의 수업연한(修業年限)은 6년으로 한다.
- 제4조(입학 자격)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1.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. 다만,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.
 - 2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
 - 4.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
- 제5조(군적 편입) 의무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

도의 군적(軍籍)에 편입된다.

- 제6조(교육과정) ① 의무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,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이 정하고,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한다.
 -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중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7조(교장 등의 임명) ① 의무사관학교에 교장을 둔다.
 - ② 교장은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령이 임명한다.
 - ③ 의무사관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(이하 "교수등"이라 한다)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(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둔다.
- 제8조(교수등의 자격 및 임명) ① 공무원 중 의무사관학교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(職種)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를 준용한다.
 - ② 의무사관학교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,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.

-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④ 의무사관학교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직공무원으로하고,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4를 준용하며, 보수・연수・신분보장・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및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을 각각 준용한다.
- 제9조(졸업자의 임용) ①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 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위(中尉)로 임용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중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「의료법」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 으로 붙일 수 있다.
- 제10조(졸업자의 자격)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되,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 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학비 등의 상환) ① 제9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이 「군인사법」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(이하 "경비"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(償還)하여야 한다.

- 1.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)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.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
- 3. 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
- 4.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(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·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) 외의 사유로 3년 이내에 「의료법」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,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)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면허취소 등) ① 국방부장관은 임용된 자가 「군인사법」을 위

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없다. 다만,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후에는 「의료법」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무사관학교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)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무사관학교의 설치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.